

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
기간: 2019년 1월 1일부터
2019년 12월 31일까지

(앞쪽)

1. 후원금 수입명세서

순번	발생일자	후원금종류	후원자구분	비영리법인구분	기타내용	모금자기관여부	기부금단체여부	후원자	내역	금액 (단위:원)	비고
1	01.23	5	3	Y	-	Y	Y	000000모금회	심리치료사업지원	74,292,000	
2	02.14	5	4	N	-	N	N	00여고 봉사동아리	학대피해아동지원	206,200	
3	03.15	1	3	Y	-	Y	Y	00000000기관	차량지원	15,804,880	
4	03.16	5	3	Y	-	Y	Y	000000모금회	-	8,654	
5	06.15	5	3	Y	-	Y	Y	000000모금회	-	12,110	
6	08.06	5	3	Y	-	Y	Y	000000모금회	심리치료사업지원	49,528,000	
7	09.21	5	3	Y	-	Y	Y	000000모금회	-	10,700	
8	12.21	5	3	Y	-	Y	Y	000000모금회	-	6,783	

2. 후원품 수입명세서

순번	발생일자	후원품종류	후원자구분	비영리법인구분	기타내용	모금자기관여부	기부금단체여부	후원자	내역	품명	수량/단위	상당금액	비고
해당 없음													

3. 후원금 사용명세서

순번	사용일자	사용내역	금액 (단위:원)	결연후원 금품 여부	산출기준	비고
1	01.31. ~12.31	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지원사업	121,232,097	-	-	
2	11.15	사례관리비	206,200	-	-	
3	03.21	아이케어카 지원차량 구입	15,804,880	-	-	

4. 후원품 사용명세서

순번	사용일자	사용내역	사용처	결연후원 금품 여부	수량/ 단위	상당 금액	비고
해당 없음							

5. 후원금 전용계좌

금융기관 등의 명칭	계좌번호	계좌명의
KEB하나은행	379-910016-46304	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
KEB하나은행	379-910007-87304	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
KEB하나은행	379-910011-69604	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

작성 요령

○ 후원금의 종류 구분

후원금의 종류	내용
1. 민간단체 보조금품	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
2. 외원단체 보조금품	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
3. 결연후원금품	아동·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
4. 법인임원 후원금품	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
5. 지역사회 후원금품	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
6. 후원회 지원금품	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
7. 자선모금품	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
8. 기타 후원금품	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

○ 후원자 구분

후원자 구분	내용	모금자 기관 여부	기부금단체 여부
1. 개인	개인	입력(Y/N)	입력안함
2. 영리법인	기업	입력(Y/N)	입력안함
3. 비영리법인	공익법인 등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 기타*) →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 *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	입력(Y/N)	입력(Y/N)
4. 민간단체	비영리단체, 외국민간원조단체, 민간단체 기타	입력(Y/N)	입력(Y/N)
5. 국가기관	입법기관·사법기관·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)	입력안함	입력안함
6. 공공기관	공기업, 준정부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	입력안함	입력안함
7. 소관법인	해당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법인 *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	입력안함	입력안함

* 모금자 기관: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(기관)

** 기부금단체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·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·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

○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.

○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·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